

##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

본인은 신길역 청년주택 '준타워'에 예비신혼부부자격으로 신청하는데 있어 해당주택의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,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.

[혼인으로 구성될 세대]

※ 입주 시 신청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할 예정인 경우 배우자 비교란의 "분리세대"에 체크하고, 양쪽 세대에 속할 예정인 사람을 모두 기재하십시오.

신청인과의 관계	성명	주민등록번호	세대주여부 및 세대주와의 관계*	비고
본인		-		동일세대 <input type="checkbox"/> 분리세대 <input type="checkbox"/>
배우자		-		동일세대 <input type="checkbox"/> 분리세대 <input type="checkbox"/>
		-		동일세대 <input type="checkbox"/> 분리세대 <input type="checkbox"/>
		-		동일세대 <input type="checkbox"/> 분리세대 <input type="checkbox"/>

\* 당첨되어 혼인으로 구성될 입주세대의 기준(세대주 또는 세대원)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신청인1 대표 신청인 :

(정자로 서명 또는 인)

신청인2 예비 배우자 :

(정자로 서명 또는 인)

**신길역 준타워 (청년주택) 귀중**